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 법무부,
GENERAL ELECTRIC과
HONEYWELL사의 기업
결합에 대해 일정 영업
분야의 분할을 요구**

미 법무부는 5월 2일 General Electric Company(GE)와 Honeywell International Inc.의 기업결합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들 두 회사의 42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결의에 대하여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경쟁제한 성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번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미국 군용헬기의 엔진생산 분야와 특정 Honeywell 비행기 엔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유지, 보수,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용역의 제공과 보조동력 장비(APUs: auxiliary power units)와 관련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독점금지국은 이들 회사들이 Honeywell의 헬기 엔진사업분야를 그들 사업영역에서 분할하고 특정

Honeywell 비행기 엔진모델과 APUs에 대하여 새로운 제3자가 MRO 용역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Honeywell의 헬기 엔진 사업은 2000년도에 약 20억 달러의 총수익을 올렸다.

독점금지국의 기업결합 운영집행국장인 Constance K. Robinson은 이러한 분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군수 산업은 더 높은 가격, 더 낮은 품질 그리고 차세대의 미국 군용 헬기 엔진의 디자인, 개발, 생산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감소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이들의 합병으로 인해 상업용 비행기 사용자들도 Honeywell 비행기 엔진과 APUs의 수리 정비에 있어 가격상승과 품질저하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Honeywell 헬기 엔진사업의 분할과 새로운 MRO 서비스 제공자의 도입 허용은 이들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이들 회사간의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은 동의 판결에 대한 합병 회사들과의 협상과 컬럼비아지구 지방법원의 명령허가에 달려 있다.

GE와 Honeywell은 미국 군용 헬기엔진 제조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제조업자로서 양자를 합하면 미국 군용 헬기 생산 중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

생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GE와 Honeywell은 역시 공동 터빈엔진가스 추진기 Joint Turbine Advanced Gas Generator (JTAGG)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방부(DOD)가 제공하는 모든 연구개발자금을 받아 왔다. 이 JTAGG 프로그램은 1988년에 시작되었는데 헬기엔진의 연료소모와 중량 비율에 따른 엔진의 힘에 있어서 기계적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DOD는 적어도 2004년까지 차세대 헬기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엔진 프로그램 20년 계획에 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를 벌이면서 DOD와 밀접한 연관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GE와 Honeywell은 TFE731 터보 프로펠 엔진에 대한 서비스를 인가 받은 회사로, Honeywell이 만든 보조동력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회사 중 두 회사이다. Honeywell의 TFE731 터보프로펠 엔진은 소형 혹은 중간 크기의 영업용 제트기에 사용된다. 보조동력장치는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비행기의 전기 시스템에 동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엔진들이다.

이들 합병과 관련된 두 회사 중 Connecticut주, Fairfield에 위치한

GE는 비행기 엔진, 가정용 가전제품, 조명, 발전기, 의학용 현상 장비, 공학용 플라스틱분야와 같은 다양한 제조 서비스를 행하는 회사이다. GE는 2000년도에 약 130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또 New Jersey주, Morristown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Honeywell은 항공전자공학 상품, 서비스 및 가정용 건축, 산업제어, 자동화 장비, 빌전시스템, 특수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전자상품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조 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0년도에 약 25십억 달러의 판매액을 올렸다.

2001. 5. 2, 미 법무부

SOTHEBY와 CHRISTIE 경매장의 두 전직회장, 국제적인 가격담합 공모형의로 기소

Manhattan의 연방대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매장인 Sotheby와 Christie의 전직 회장을 경매 수수료 담합 공모형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경매장에서 예술작품, 보석, 고전가구 등의 판매자들에게 부과되는 경매 수수료를 공모하여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Sotheby 이사회의 회장이었던 A. Alfred Taubman과 1993년부터 1998년까지 Christie 이사회의 임원이었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Christie 이사회 회장이었던 Anthony J. Tennant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자에 대

한 경매 수수료를 담합하기로 공모하여 셔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Taubman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Tennant는 영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자가 직접 형사 기소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의 국제적인 공모기간 동안 Sotheby와 Christie에서 미국의 판매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적어도 40억 달러이다. 양 회사는 예술작품, 보석, 고전가구에 대한 전세계 실시간 경매의 90% 이상을 맡아 왔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판매자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기격과 수수료 담합에 대해 협상불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로 가격 면에서 경쟁해 왔고 서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를 감액시켜 왔었다. 공모의 결과로 판매자들은 그들의 주된 교섭도구를 잃었다.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사건에서 형사 기소를 전담하는 보좌관인 James M. Griffin은 이 사건에서 이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점금지국은 가격담합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감히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설시되어 있다.

- Taubman과 Tennant가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과 회담에 참가
- 판매자의 수수료에 대한 담합에 의해 가격상승 합의
- 판매자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협상

불가 사항을 가격표로 발행하기로 합의

- Christie와 Sotheby가 협상 불가 사항인 수수료의 가격표를 발행할 순서에 합의
-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가격표를 합의된 바에 따라 발행
- 협상 불가능한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가격표의 유지를 감시 · 시행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교환
- 판매자에 부과된 가격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합의

이미 2000년 10월 Sotheby의 전임 경영자였던 Diana D. Brooks는 판매자에 부과된 경매 수수료를 담합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유죄를 시인한 적이 있다. Sotheby는 4천5백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Brooks는 벌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Christie는 이전에 독점금지국의 관용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에 협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법무부는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관용 프로그램 하에서 회사가 만일 자발적으로 공모에 가담한 사실을 보고하고 다른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형사 기소를 면할 수도 있다.

Taubman과 Tennant는 최고 3년의 금고형과 1인당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셔먼법 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벌금의 최고 한도액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2배 혹은 범죄의 희생자가 입은 피해액의 2배가 벌금 최고액 보다 더 큰 경우 그 수익 혹은 손실액의 2배까지 증가 될 수 있다.

경매사업에 대한 조사는 독점금지국의 New York 사무소와 FBI New York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1. 5. 2,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운송용역회사의 채권 추심을 위한 위임회사의 공동설립을 승인

미국 법무부는 Transportation Services Inc.(TSI)가 미국과 서인도 제도 사이의 무역에 종사하는 해양운송업자를 위한 공동 요금청구와 수금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운임수금회사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5월 1일 발표하였다.

본래 동일 경쟁자들 간의 공동판매 혹은 영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상호간의 고객 정보 혹은 가격 정보를 공유하여 반독점적 카르텔의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다. 따라서 이들 경쟁자들의 채권 추심을 위한 공동 회사를 설립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었다.

독점금지국의 법무보좌관 대리 John M. Nannes는 TSI에게 보내온 검토서에서 법무부는 교환되는 정보가 채무체납자에 대한 정보에 한정하고, 해양운송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결정을 계속하는 한, TSI가 그의 경쟁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계획은 반독점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서인도 제도 사이의 무역에 종사하는 해양운송자들은 자신들이 화물 송부인에게 임대한 통일된 규격의 선박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일단 화물이 인도된 다음에는 화물 수

취자들이 그들 화물의 임시적인 적재를 위해 종종 임대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장비 반납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업자들은 상품 인수인에게 유치 초과 할증금으로 불리우는 요금을 부과한다. 각 운송업자들은 운임표나 혹은 운송업자가 유치 초과 할증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부과하는지를 결정하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방침을 정한다.

TSI에 따르면 미국과 서인도 제도의 무역에 종사하는 운송업자들은 종종 유치 초과 할증금을 수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TSI와 그의 장래 고객들은 유치 지연금을 내지 않은 많은 상품 선적인들과 수취인들이 이전의 연체된 지연금을 내지 않고 다른 해상운송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수금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SI는 미국과 서인도 제도 사이의 무역에 종사하는 해상운송업자들에게 유치 지연금을 청구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대행할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의하였다. 공동 수금대행인은 지연금 총액과 지연일자를 포함하여 지연금을 내지 않은 고객의 명단을 발행할 것이다. 공동 수금대행인은 고객들(해상운송사업자들)이 채무지체자의 명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운송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신의 수금정책을 회사들의 사정에 따라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TSI와 그의 공동 수금대행인은 회원들과 체납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TSI와 그의 공동 수금대행인은 운송사업자 상호간에 신용거래관계 혹은 일반 신용조건 혹은 운송사업자의 관행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고객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각 해상운송업자들은 체납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의 영업검토절차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독점금지국에 제안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고 독점금지국이 독점금지법에 따라 동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다.

2001. 5. 1.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

E U

독일 IMS HEALTH 판매방법,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충돌

유럽위원회는 의약품회사들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IMS Health사가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독일 내에서의 판매방법을 이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의 경쟁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MS Health사는 독일 내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EU 경쟁법과 저작권에 관한 국내 규범이 충돌되는 경우로서, 여러 기업과 법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U 경쟁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영업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계 시장에서의 총수입의 10%까지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IMS사가 독일 내 경쟁자들에게 라이센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사건을 예사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내에서의 판매를 위한 자료들을 분류하여 이들 의약품 회사들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경쟁자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한편 유럽위원회의 관계자는 이 사건을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회사들은 미연방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윈도우즈 운영체계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코드를 모으면 윈도우즈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쟁업체들의 주장이었다.

IMS는 약품 판매 자료들을 독일 내 지역별 및 그 하부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른바 1860개의 벽돌구조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에게 주요 지역별로 판매량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IMS사는 독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개의 경쟁업체는 IMS사가 벽돌구조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IMS사 측에서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할 의무가 없다고 항

변하고 있다.

2001. 4. 5,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독일체신주식회사에 과징금 부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기업이었다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독일체신주식회사(Deutsch Post A.G.)가 업무용 소포 및 기타 소화물의 우송료를 인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United Parcel Service (U.P.S.)사가 유럽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독일체신주식회사가 우편배달에 있어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U.P.S.가 독일체신주식회사를 최초로 제소한 지 7년이 지난 후, 유럽위원회의 경쟁법 최고책임자는 독일체신주식회사가 2천4백만 유로 또는 2천1백8십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포배달이라는 경쟁적 사업부문을 서신배달이라는 독점적 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공기업이지만 U.P.S.나 FedEx와 같은 민간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유럽 내 체신회사들에 의한 상호지원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U.P.S.사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며, 이 결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액수의 과징금이 독일체신주식회사에 부과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체신주식회사와 그 투자자

들 역시 유럽위원회의 평결에 참석하였으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클라우스 춤빈켈은 위원회의 결정이 기대했던대로였다면서, 유럽위원회가 독일체신주식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며 만족해 했다.

유럽위원회의 마리오 몬티는 “199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독일체신주식회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포배달서비스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조사결과 독일체신주식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우편주문배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독일체신주식회사가 대규모 고객들에 대해서 특별히 요금을 할인해 준 사실을 비난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가 운영하는 독점적인 체신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이 국제적인 소포배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1. 3. 21, The New York Times

EU, 통신사업에 관한 새로운 경쟁지침 제안

유럽위원회는 EU 차원에서 적용되는 통신사업 분야에서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EU 경쟁법에 기초한 이 지침은, 각국의 경쟁당국이 전기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장지배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유럽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또한 모든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15개

국의 경쟁법이 일치되게 접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단일한 경쟁규법을 적용함으로써 완전히 자유화된 전기통신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라고 유럽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이 지침은 통신시장의 하위시장들을 획정할 수 있는 좀 더 간명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제로 예전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인터넷서비스나 유선네트워크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 3. 28, The New York Times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타 회원국 정부들이 독일 정부의 주장을 묵살한다 할지라도 유럽의 회가 주주에게 유리한 조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EU의 인수합병지침이 법제화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 5. 3, Wall Street Journal

적 구제제도를 정비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한 충분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아울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억제하고자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는 자기책임원칙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지청구권자 -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누구나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금지청구권자는 아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피고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 ② 피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 ③ ①이나 ②의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 ④ 동경 지방법원
 위 ③과 ④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민사소송법의 특례) 금지 청구소송에 대하여 전문적·통일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중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을 말하는데, 공동보이콧, 부당염매, 기만적인 고객유인,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유

일 본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정비

EU 인수합병지침 제정 난관에 놓착

독일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한 포이즌 필(Poison Pill)의 사용 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제적 인수합병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EU가 난관에 놓착하게 되었다. EU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국제적 인수 합병 법제를 통일하기 위해 인수합병지침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나, 이미 15개 EU 회원국 내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 제정이 뒤늦은 감이 있다.

인수합병지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영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방어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마다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독일 정부는 경영자가 주주들의 의사를 한번만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인수합병 시도에 대항할

일본에서는 종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뿐이었다. 그러나 2001년 4월부터 개정 독점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외에도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지청구소송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개정 독점금지법은 동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도 정비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독점금지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적 독점(다른 사업자의 자제·배제), 부당한 거래제한(가격카르텔, 입찰담합 등)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한 사업자에 국한하였으나, 이제는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가격 카르텔 등을 행한 사업자 단체와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거래제한을 행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스스로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2001. 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삼정화학주식회사와 무전약품공업주식회사 에 의한 우레탄 사업 등의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화학주식회사(이하「삼정화학」이라 함)와 무전약품공업주식회사(이하「무전약품」이라 함)가 2001년 4월에 예정하고 있는 우레탄 원료 및 우레탄의 유도품 등과 관련된 사업 통합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연질 우레탄 폼 등의 원료인 TDI의 제조·판매 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

해소방안이 문제되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회사의 설명 및 당해 회사가 문제해소조치를 강구할 것을 전제로, 이 통합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당시 회사에 회신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삼정화학과 무전약품이 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 사의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생산·물류 및 판매에 있어서 비용 등의 절감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양 사의 우레탄 사업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전약품은 공동출자회사의 영업시작 5년 후에는 해당 공동출자회사의 지분과 모든 주식을 삼정화학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를 확정하였는데, 본 건에서는 결합의 대상인 우레탄 원료마다 일정한 거래 분야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경쟁업자의 상황, 수입, 사용자의 상황 및 당사회사들의 문제해소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001. 2. 27,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 가격유지제도 존속시키기 기로

신문, 서적, 잡지, 음악용CD 등 저작물의 재판매제도에 관하여 존폐여부를 검토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에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2월 7일에 「저작물 재판제도의 재평가에 관한 검토상황 및 의견 조회에 관하여」를 공표하고, 올해 1월 25일까지 저작물 재판제도의 존폐 문제에 관하여 올해 1월부터 2월에 걸쳐, 64개의 소비자 단체 및 14개의 저작권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같이 각계의 의견을 구한 결과 개인 및 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의견의 건수를 보면, 재판제도의 유지를 요구한 의견이 28,048건이었고,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의견은 338건이었다.

먼저, 서적 및 잡지에 대하여 재판제도의 유지를 찬성한 의견으로서는, 문화상품인 책에 대하여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유통제도를 생각한 것은 부적당하다. 재판제도가 폐지되면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종래 서점의 다양한 상품은 인기상품 쪽으로만 치우치고, 출판사는 인기상품만을 발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소형서점이 도태되거나, 서점 사이의 가격차이가 발생한 결

과 특히, 지방의 소비자, 고령자, 아동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재판제도의 폐지에 찬성한 의견으로서는, 소비자가 서점을 선택하여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 재판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면 보다 더 우수한 내용의 서적·잡지가 발행될 것이고, 이는 곧 시장의 활성화에 연결될 것이다. 또한 저가격 판매를 행하는 서점이나 가격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서점 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점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과 관련해서는, 재판제도의 유지에 찬성한 측에서는, 재판제도가 폐지된다면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판촉경비가 증가해 그 결과 판매점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호별 배달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 신문 정보에의 평등한 액세스가 저해되고, 취재 경비가 줄어들며, 지면의 질이 저하될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유지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재판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측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강한 호별 배달을 판매점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쟁 결과 지면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은 시장경제 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음악용CD 등과 관련해서 재판제도의 유지에 찬성한 자들은 재판제도가 폐지된다면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레코드상점의 다양한 상품은 인기 상품만으로 치우치게 되어 유명회사들은 인기상품만을 제작, 결국 음악문화의 유지나 작가와 아티스트들의 육성이 곤란해진다는 점, 지방의 레코드상점이 폐업하거나 레코드상점 간에 가

격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지방의 소비자, 고령자, 아동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자들은 재판제도를 폐지하면 소비자가 레코드상점을 선택하고 보다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그 결과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점, 재판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앞으로의 IT혁명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일본에서만 음악용CD 등에 대한 재판제도가 필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2001. 3. 23. 산케이신문

캐나다

캐나다 경쟁국, 에어 캐나다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경쟁국은 금일, 에어 캐나다에 의한 저가격 항공회사 West Jet 및 Can Jet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경쟁심판소에 구하였다. 경쟁법 제79조의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당국은 에어 캐나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을 포함하지 않는 운임으로 캐나다 이스턴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하였다.

본 건은 West Jet 항공 및 Can

Jet 항공의 캐나다 동부시장으로의 진입에 따른 에어 캐나다의 대응에 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상이 되는 항로는 Halifax-Montreal, Halifax-Ottawa, Halifax-St.John's, Toronto-Moncton, Toronto-Saint John, Toronto-Fredericton, 및 Toronto-Charlottetown이다.

경쟁국은 에어 캐나다의 가격설정 및 운송능력관리로 인하여 West Jet 및 Can Jet가 상기 항로에서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이들의 퇴출은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이 보다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구조개혁 진행과 동시에 우리는 신규진입자가 경쟁을 행할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토록 할 것이다」라고 Konrad von Fincchensstein 경쟁국장은 말했다.

경쟁국의 조사결과 및 특히 이 회피가능비용테스트의 적용에 대하여 에어 캐나다와 경쟁국은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에어 캐나다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로 쟁송중인 항로 가운데 3개의 특정 운임을 철회하고 경쟁국과 에어 캐나다가 공동으로 경쟁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였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게임의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법원에 의해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됨으로써 모든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침과 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위원은 말했다.

2000년 2월 8일, 경쟁국은 항공산업에 있어서 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잡행가이드라인안을 제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경쟁국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분명히 하고, 회피가능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경

쟁국의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경쟁국 생각에는 「회피가능비용」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즉 연료, 기체비용, 조종사, 승무원, 항공권 및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회피될 수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중에는 항공산업과 관계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나 대부분의 지상 또는 터미널 비용, 또는 회사의 일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1. 3. 5, 캐나다 산업성경쟁국

의 매출을 올렸다. 이 사건은 동 제품에 관한 경쟁국의 최초의 소추이다.

「국제적 카르텔은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폭등의 원인이 된다. 경쟁국은 캐나다의 산업계 및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한의 법적 효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Johanne D' Auray 경쟁·형사사건담당 차장은 말했다.

제소에 관계된 자료의 인증등본은 재판자료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3. 1, 캐나다 산업성경쟁국

호주에서 가격을 구속하고 시장을 할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였다. ACCC 및 3사는 상기 과징금 총액이 부과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법원에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상기 3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타민 공급사업자로서, F.Hoffman-La Roche Limited, BASF Aktiengesellschaft 및 Aventis Animal Nutrition SA사 등이다.

ACCC 위원장인 Allan Fels 교수는 금일, 모회사의 세계적 규모로 보아 본 건은 ACCC가 제소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ls 교수는 법원에 의한 이러한 기록적인 과징금의 부과는 1개사로서는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는 과징금 부과로써 커다란 약진이라고 말했다 (법률은 1건의 위반에 대하여 최고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ACCC는 법원이 다른 사업자들이 같은 카르텔행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 건에 이제까지 부과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ACCC와 피고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공모의 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비타민 A 및 E에 관한 가격카르텔 및 시장분할협정이 피고회사 즉, FHLR, BASF AG, Aventis SA의 세계 각지의 자회사 간에 체결되었다.
- 이러한 협정의 일부는 FHLR, BASF AG, Aventis SA 각 사의 자회사가 호주 및 기타 지역에서도 협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미국기업, 가격을 고정하는 국제적 공모에 참가하였다는 유죄답변

캐나다 경쟁국은 금일, 미국기업인 Carbone of America Industries Corp.이 반기계가공 및 비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제조에 관하여 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유죄답변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토론토의 연방 법원 사실심리부는 동 사에 대해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등방성흑연은 내열·내약품성에 뛰어난 미립자탄소제품이다. 이것은 일 반적으로 방전가공용전극, 금속의 연속가공을 위한 주형 및 반도체산업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Carbone사는 이 제품에 관하여 가격을 고정하고 세계시장을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 국제카르텔의 멤버이다. 동사는 1993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계속된 공모실시 기간 중 캐나다에서 약 164만 달러의 등방성흑연

호 주

호주 연방법원, 비타민 공급업자에 대해 기록적인 2,6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시드니 연방법원의 Lindgren판사는 금일, 1974년 거래관행법에 위반하여 가격카르텔 및 시장분할을 행한 동물용 비타민 공급업자 3사에 대해 제안대로 합계 2,600만 달러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의해 과징금은 Roche Vitamins Australia Pty Ltd(1,500만 달러), BASF Australia Limited(750만 달러), Aventis Animal Nutrition Pty Ltd(30만 달러)에 대해 부과되었다.

상기 3사는 1974년 거래관행법 제45조에 위반하여 동물용 비타민 A, E 및 이들 비타민의 혼합제품에 대하여

- 것이다.
- FHLR, BASF AG, Aventis SA 또는 특정 계열 지역회사의 임원은 지역에서 도매가격을 구속하고, 호주 및 기타 지역의 시장점유를 할당할 것에 합의하였다.
 - 호주법인 피고는 비타민 A, E 및 동 비타민 혼합제품에 관한 가격카르텔 및 시장분할협정을 발효하여 실시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또한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다.
 - ACCC는 본 건의 위반사실이 호주의 거래관행의 역사 중에서도 비유할 수 없이 심각한 것으로서, 3개의 대규모 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세계적 규모로 행해진 협정에 관한 위반으로 파악되었다.
 - 피고회사 또한 법원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에 합의함으로써 스스로의 공모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였다. ACCC 및 각 피고회사는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음의 공적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 본 건 행위는 은폐되어 이루어졌고 내부적인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완전히 인식,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여 이루어졌고
 - 본 건 행위는 의회가 경쟁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당연위반행위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 공모의 협정에 영향을 미친 매출액이 현저하고 본 건 협정이 동물용 비타민 A, E 및 이러한 비타민 혼합제품의 모든 판매시에 최저한도 가격을 설정하였으며
 - 위반행위자가 호주의 동물용 비타민 대형공급업자 3사라는 점
 - 제척기간의 관계에서 RVA 및 BAL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 이상, AAN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 이상 각각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 피고회사 3사가 동물용 비타민 A 및 E 공급시장의 90%를 지배하고, 관계기업그룹이 비타민 A 및 E의 지배적인 세계적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고객이 한정된 대체적 공급원(source) 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점
 - 법원이 수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화물운송 및 콘크리트 산업에 부과하고, 과징금의 최고액이 이제까지의 40배인 1,000만 달러로 인상된 후에도 본 건 행위를 계속 행하였으며
 - 공모의 협정이 국외 및 호주 쌍방의 임원급에서 체결되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
 - 본 건 공모의 협정기간 중 각 사는 거래관행에 관한 적절한 Compliance Program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행위를 행하였다.
 - 각 피고회사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 공모의 협정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ACCC의 심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며, 각 당사자가 법원에 적절한 과징금을 신청하였고, 또한 금지명령, 공판 및 ACCC의 재판비용 지불 동의를 포함 기타 적절한 제안 등에 관한 합의형성에 협력하며 각 피고회사가 이 Compliance Program을 호주의 표준에 맞도록 합치시키겠다는 보증의 뜻을 법원에 확약하였다.
- Fels교수는 ACCC가 법원이 본 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ACCC 및 피고회사가 제안한 기록적인 과징금을 적당하다고 평가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은 거래관행법 위반에 따라 높아진다는 메시지를 호주의 산업계에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기 판결문에서 Lindgren 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안된 과징금은 추정된 이익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매출액으로 볼 때도 상당액이 될 것이다.」
- Fels교수는 ACCC가 앞으로도 호주 시장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국제카르텔을 정력적으로 추적하여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 2. 28,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